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44 발의연월일: 2025. 1. 8.

발 의 자 : 임종득 • 윤한홍 • 김미애

김석기 · 김기현 · 조배숙

장동혁 • 유용원 • 김태호

강승규 • 권영진 • 한기호

이헌승 • 부승찬 • 서천호

송석준 • 박대출 • 박정하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는 공유수면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 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·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받아야 함.

그리고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국방과학연구소가 개 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 중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, 시험을 위 하여 공유수면 점용·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.

그런데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에 있어서 기존 공유수면관리청의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성·이해 부족으로 시험에 필요한 공유수 면 점용·사용허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기체계의 개발 일 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·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·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할수 있도록 하고,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 국방부장관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,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자함(안 제21조의3).

법률 제 호
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3(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) ① 연구소가 연구·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·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할 수 있다.

-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 관,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시급성 및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1조의3(공유수면 점용・사용
	허가 등에 관한 특례) ① 연구
	소가 연구·시험을 위하여 <u>공</u>
	유수면을 점용·사용하려는 경
	우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
	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
	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
	한 법률」 제8조에도 불구하고
	국방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
	또는 사용 허가(변경허가를 포
	함한다)를 할 수 있다.
	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
	허가를 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
	부장관,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
	<u>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</u>
	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
	•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	③ 제1항의 시급성 및 기밀성
	의 기준은 국방부렁으로 정한
	<u>다.</u>